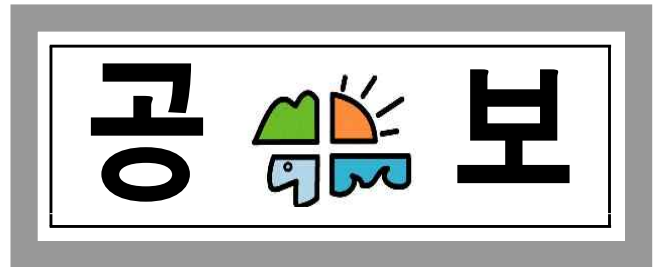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19호 2012년 8월 20일(월)

공 고

○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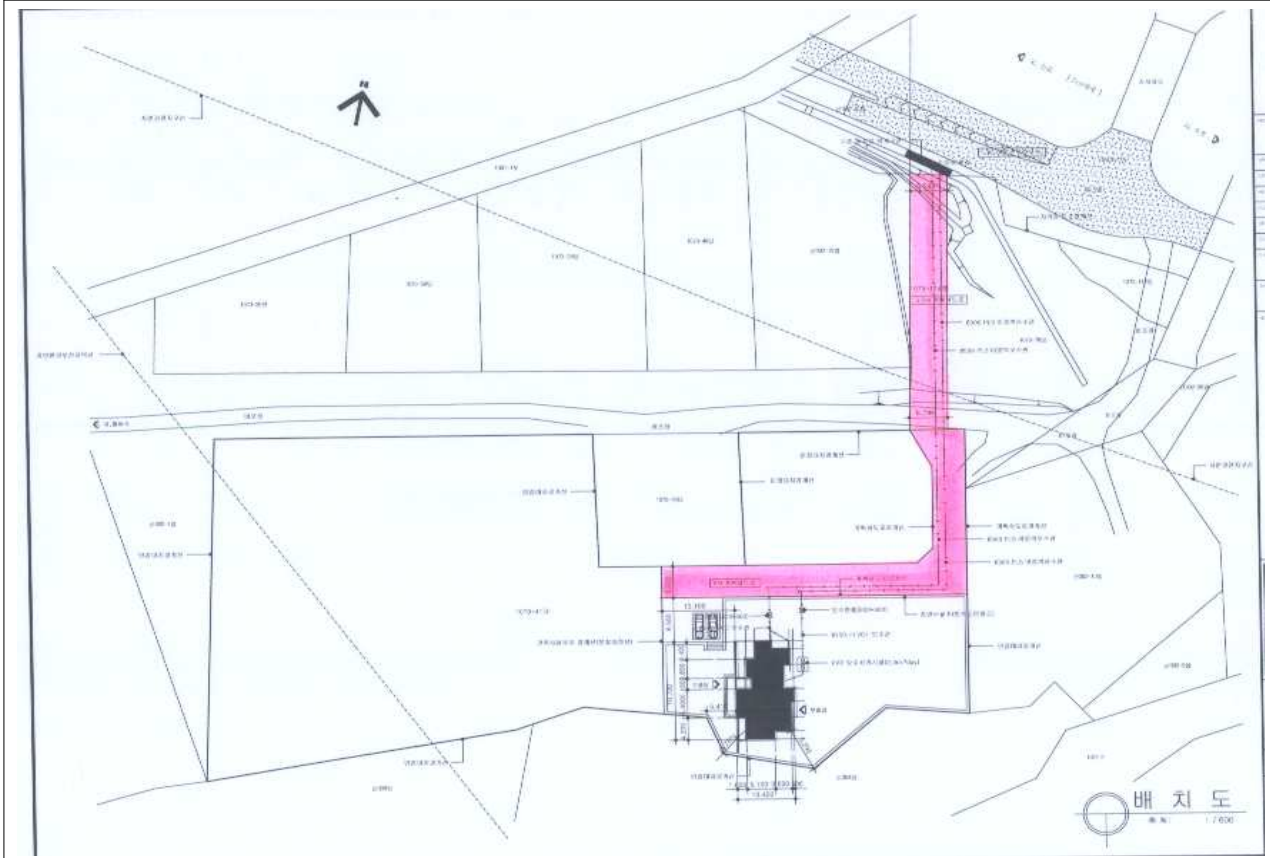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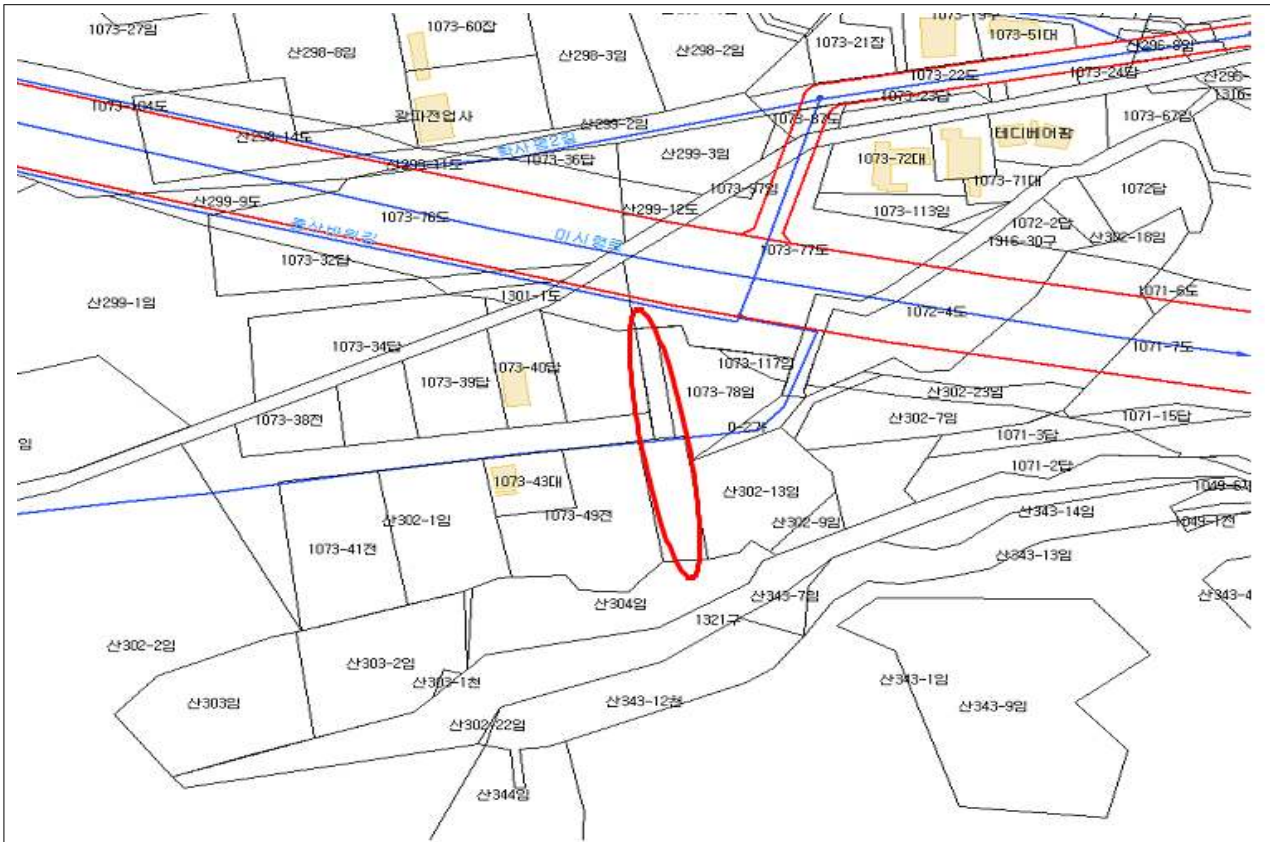
2012년 8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도로지정조서 참조
3. 도로길이 : 도로지정조서 참조
4. 도로너비 : 도로지정조서 참조
5. 도로지정 면적 : 도로지정조서 참조
6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 번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면 적(m ²)		소유자	허가번호 및 허가일	비 고
	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노학동	1073-114 (임)	49	6.5	330	330	김명희	2012-건축허가 -제60호 (2012.08.14.)	
	1073-41 (전)	87	6	7,256	501			
	산161-21 (임)	24	3.5 ~4.5	1,091	64.5	최은수 외 1	2012-건축신고 -제31호 (2012.08.16.)	(주) 제이앤디
	산161-21 (임)	42	2.0 ~4.0	1,091	71.5	"	2012-건축신고 -제32호 (2012.08.16.)	"

노학동 1073-114(임), 1073-41(전) / 토지소유 : 김 명 희



노학동 산161-21(임) / 토지소유 : (주)제이엔디, 최은수

